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75
----------	------

발의연월일 : 2021. 3. 29.

발 의 자 : 김홍걸·양기대·이규민  
임오경·한준호·오영환  
이학영·김민철·한병도  
김윤덕·김경만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제품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 혹은 제조연월만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빙과류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빙과류등의 표시기준)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이하 “빙과류등”이라 한다)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는 빙과류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제1호 중 “제5조제3항”을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5조제3항”을 각각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빙과류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빙과류등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빙과류등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  
· 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  
용한 자

2. ~ 4. (생략)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식품의약  
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  
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  
· 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  
용한 경우

2. ~ 6. (생략)

② (생략)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  
-----  
-----

2.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영업정지 등) ① -----  
-----  
-----  
-----  
-----  
-----  
-----  
-----  
-----  
-----  
-----

1.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3항-----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2. ~ 6. (생략)

④·⑤ (생략)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  
-----  
-----  
-----  
-----  
-----.

1.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3항-----

2. ~ 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① -----  
-----  
-----  
-----.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빙과류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  
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  
용한 자

<p>1. (생략) 2. (생략) ②·③ (생략)</p>	<p><u>1의2.</u> (현행 제1호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	--